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숲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숲 조성 및 학교 내 수목 관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숲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학교 내 수목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조문 제정

나. 조례의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

다.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규정

라. 학교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정비

마. 학교숲 조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